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2435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함
- 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개요

- 설치년도 : 2021년
- 기금 조성 총규모: 385억원

(단위: 천원)

기금명	'20년도 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 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b)	지출(c)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38,459,744	0	38,459,74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기획팀 이원경 (☎ 399-9648)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교육시설안전과, 2021.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I. 운용총칙

1 기금 설치개요

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② 목적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 연차적 적립·조성

③ 설치년도: 2021년

① 기금 사업목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② 2021년 기금 사업개요

가. 기금조성 사유

-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재원 확보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개축, 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설계 이전 **각종 행정절차*로 인하여 당해연도 예산 집행 불가**

* 사전기획용역, 검토위원회,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나. 기금조성 재원

- 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②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④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⑤ 그 밖의 수입금

다. 기금조성 용도

-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②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 ③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라. 사업 계획

※ 21년 계획은 그린스마트사업에 한해 작성

- 스마트 인프라 확충, 친환경 제로에너지 추진 등 **미래학교 가치 구현**
- **학교단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 집행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학교 공간과 교육의 혁신을 이뤄내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선 교육청 대상의 **역량 지원 강화, 적극 행정 장려, 애로사항 해소**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 필요'(2021. 교육부 업무계획 관련 대통령 당부사항)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사업대상: 40년 이상 경과 학교건물 496동(1,368천㎡)
- 총사업비: 3.2조원(국비 0.97조원(30%), 지방비 2.2조원(70%))
- 사업방식: 재정사업 2.3조원(75%), BTL 0.95조원(25%)
- 사업유형: 개축(공립), 리모델링(공사립)
- 5개년(2021~2025) 사업물량 및 사업비

(단위: 동, 억원)

구분	2021~2025		2021		2022		2023		2024		2025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전국 (100%)	2,835	185,037	761	49,670	518	33,809	518	33,809	518	33,809	520	33,940	
서울 (17.5%)	496	32,341	134	8,133	90	6,010	90	6,010	90	6,010	92	6,178	
사업 방식	재정	374	22,814	102	6,222	68	4,148	68	4,148	68	4,148	68	4,148
	BTL	122	9,527	32	1,911	22	1,862	22	1,862	22	1,862	24	2,030



③ 기금 조성·운영 주요 내용

가. 2021년도 기금 조성 계획

- 그린스마트 사업시기 초반으로 기금조성 규모 측정 곤란 및 사업시기 불확실
-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그린스마트 사업시기와 달리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교부되어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불용 우려
- 교육부 보통교부금 자금 관리 필요

⇒ 2021년 교부금 범위 내에서 기금 조성 필요

⇒ 향후, 사업이 확정된 이후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기금조성 계획을 수정 반영**할 계획

나. 기금 조성 총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년도 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 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b)	지출(c)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38,459,744	-	38,459,744	

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 재원별	'20년도 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 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	38,459,744	-	38,459,74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38,411,000	-	38,411,000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	48,744	-	48,744	

라. 기금 용도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설치·운영 조례」 제4조
- 대상: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시설비

마. 기금 관리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관리: 예치금으로 운용

4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없음

II. 자금 운용계획

1 기금 수지 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1년 수입액	'20년 수입액	증 감	지출항목	'21년 지출액	'20년 지출액	증 감
합 계	38,459,744	-	38,459,744	합 계	38,459,744	-	38,459,744
교특회계 전입금	38,411,000	-	38,411,000	비용자성 사업비	-	-	-
기부금	-	-	-	용자성 사업비	-	-	-
용자 금수	-	-	-	인력 운영비	-	-	-
예치 금수	-	-	-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48,744	-	48,744	예치금	38,459,744	-	38,459,744
기타	-	-	-	기타	-	-	-

2 기금 수입 계획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21년 수입액	'20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자체수입(20000)				48,744	-	48,744	
		이자수입(24000)		48,744	-	48,744	
			이자수입(24000)	48,744	-	48,744	
			예금이자수입(24101)	48,744	-	48,744	
내부거래(50000)				38,411,000	-	38,411,000	
		전입금(51000)		38,411,000	-	38,411,000	
			전입금(51100)	38,411,000	-	38,41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1102)	38,411,000	-	38,411,000	
수입 합계				38,459,744	-	38,459,744	

3 기금 지출 계획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1년 지출액	'20년 지출액	증감
교육						38,459,744	-	38,459,744
		교육일반				38,459,744	-	38,459,744
			예비비 및 기타			38,459,744	-	38,459,744
				예비비 및 기타		38,459,744	-	38,459,744
				내부유보금		38,459,744	-	38,459,744
				예치금(710-04)		38,459,744	-	38,459,744
지출 합계						38,459,744	-	38,459,744

Ⅲ.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㉑-㉒)
	계(㉑)	전입금	이자 수입	계(㉒)	비용자성 사 업 비	기타지출	
2021	38,459,744	38,411,000	48,744	-	-	-	38,459,744

Ⅳ.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20년도 말 현재액㉑	'21년도 말 현재액㉒	증감(㉒-㉑)	
합 계	NH농협은행	-	38,459,744	38,459,744	
예치금	NH농협은행	-	38,459,744	38,459,744	
예탁금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